

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

1. 관련 기사

□ 3.12.(수) 조선일보, “임금은 교섭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”

- 화성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 교섭절차를 시작했다...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“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.”고 언급했는데, 이 역시 노동부가 발표한 해석지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.
- 임금이 교섭대상이 되는지도 마찬가지이다....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는 이미 원청 교섭시 임금인상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.

2. 설명 내용

<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>

□ 정부는 ‘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·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.’고 해석지침을 통해 밝힌 바 있음

- 공공부문은 법률과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영역으로,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국회의 법적 권한 및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고, 예산 통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사용자성을 합리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을 해석지침을 통해 밝힌 것임
- 다만, 공공부문 모든 영역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일률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,

-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공공기관이 외부 위탁기관 등의 노동자에 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·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하여, 해당 외부 위탁기관 등이 그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지속적으로 제약·통제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

- 따라서 해당 기관의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 및 실질적·구체적 지배·결정이 인정되는 범위의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기존 해석지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님

-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 하에서,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·협의를 나가겠음

-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,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, 노동계와의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검토·추진해 나갈 계획임

<임금에 대한 해석지침이 무력화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>

-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고, 그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고 결정되는 것으로, 개별 사안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됨

- 따라서 일부 현장에서 임금을 교섭의제로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정부의 해석지침이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

- 정부는 앞으로도 임금 등의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해석지침의 원칙에 따라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일관되게 제도를 운영해나겠음

〈「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」 中〉

-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고, 그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 당사자인 계약사용자와 관련근로자 사이에 발생하고 결정되는 것으로, 개별 사안에서 계약외사용자가 임금에 관하여 실질적·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대해 도급인에게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
 - 다만, 계약외사용자와 계약사용자 사이의 노무도급계약 등에서 관련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근거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성 인정이 가능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서명석 (044-202-7611)
		담 당	서기관	유현경 (044-202-7609)
			서기관	정장석 (044-202-7615)

